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03

발의연월일: 2023. 1. 11.

발 의 자:우상호·김정호·김홍걸

이성만 • 이수진비 • 이용빈

이원욱 • 이인영 • 이형석

장경태 · 한준호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
	공하는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
	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
	<u> 여야 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